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및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12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및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발굴·복원·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복원·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 추진 및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개정안은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정의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역사문화권 콘텐츠 개발 등의 역사문화권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계 기업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u>“역사문화권브랜드화”란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비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문화·관광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u>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생략) <u><신설></u>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10조의2에 따른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0조의2(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적·유물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권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2.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브랜딩 4. 문화관광과 연계된 마케팅 5. 역사문화권의 정체성이 반영된 경관 및 향유공간 정비 6. 역사문화권과 지역의 산업·경제와 연계사업 7. 그 밖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u>제27조의2(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이해충돌의 조정</u> <u>2. 정례적 의견 수렴</u> <u>3.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 연계·협업</u> <u>4. 그 밖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요청하는 사업</u> <u>③ 그 밖에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라 함)에 따르면,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9개의 권역을 의미하고, 역사문화권을 둘러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라 함.¹⁾

국가유산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역사문화권의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²⁾).

그런데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복원·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을 도입·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사·연구·정비와 함께 해당 지역만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문화·관광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5호 신설),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이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유적·유물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브랜딩 등의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③ 또한,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④ 국가유산청장이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이해충돌의 조정, 정례적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고 함)를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7조의2 신설).

개정안은 고대 역사문화에 디지털콘텐츠와 지역 특화 서사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

체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실질적인 관광 수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자원의 브랜드화 및 콘텐츠 활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기능이므로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 및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수행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역사문화권을 활용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은 국가유산의 보존·활용이라는 국가유산청의 고유 사무와 거리가 있고, 국가유산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3)에서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은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통해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